

의안번호	2211686
의 퇴 인	위성곤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0.
추계번호	25F395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스마트물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71조의3 신설 (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감면)	○ 스마트물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- 감면내용: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물류창고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40% 감면 - 적용기한: 2030.12.31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1조의3 신설 (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71조의3 신설)

- 개정안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물류창고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40% 경감
- ‘스마트물류센터’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물류시설
 - 스마트물류센터는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,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·고효율·안정성·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도입
 - 2025.6.30. 현재 52개 인증

- 이와 유사한 지방세 감면제도로 물류시설용 부동산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시행 중

[표 1]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및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감면내용			감면실적			적용기한
			2021	2022	2023	
물류시설용 부동산 (지특법 제71조 제2항)	소 계		23.4	11.7	2.4	2025.12.31
	취득세	50%	19.4	8.5	0.2	
	재산세	35%(5년간)	4.0	3.2	2.3	
도시첨단물류단지용 부동산 (지특법 제71조의2)	취득세	15%	2024.1.1. 시행 (2023.12.29. 신설)			2025.12.31
	재산세	40%				

- 개정안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물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규모 및 공시가격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자료 부재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